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8. 31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8. 3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9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 남평우)

제정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. 7.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(2000. 7. 27 제16922호.)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이 시, 군에서도 가능하여졌고,
- 2000. 7.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(과징금)의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 귀속됨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

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재원은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정함(안 제4조)
- 기금의 사용·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용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비, 식품 위생 및 시민영향에 관한 조사, 연구시설비 등으로 정함(안 제6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삼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해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융자계획, 융자대상, 융자신청, 융자조건, 융자금의 대하 등 융자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16조)
- 기금의 운용계획·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에서 매년 지원 예상되는 금액은? ○ 과징금이란 무엇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 1억원 정도로 판단됨 ○ 업소에서 불법행위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벌금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을 과징금이라 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확보를 위하여 과잉 단속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로 경찰측에서 단속을 많이 하나 계도 및 지도 명행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번호	제515호
의결년월일	제90회 (2001. 9. 8)

제출년월일 : 2001. 8. 31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정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 진흥기금을 2000. 7.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(2000. 7. 27 제16922호)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이 시, 군에서도 가능하여졌고,
- 2000. 7. 13일 이후 정수되는 식품진흥기금(과징금)의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 귀속됨에 따라 부천 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

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재원은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정함(안 제4조)
- 기금의 사용·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용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비, 식품 위생 및 시민영향에 관한 조사, 연구시설비 등으로 정함(안 제6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해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융자계획, 융자대상, 융자신청, 융자조건, 융자금의 대하 등 융자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16조)
- 기금의 운용계획·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7조)

 조례제정안

불 입

관계법령 발췌서

- 식품위생법 제1조·제65조·제71조
-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·제39조·제39조의2·제42조·제43조

 관계사업계획서

- 해당없음

 사전입법예고

- 해당없음

 기타 참고사항

-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
-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영업자"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2. "시설개선자금"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3. "대하"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한다.

②기금은 10억원까지 조성한다.

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을 포함한 조성액의 30%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기타수입금

제5조(기금의 귀속절차) 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9조의2의 규정에

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음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
3.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4. 식품위생 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6. 영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

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·보관업무와 음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
2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
2.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
3. 시의원
4.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

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여기간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식품위생담당과장이 된다.

제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
2. 분임운용관 :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
3. 기금출납원 :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종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융자계획) 시장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응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응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융자대상)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.

제14조(융자신청 등)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에 의한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)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, 이율,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융자금의 대하)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7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사용된 것으로 본다.